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뉴욕주 재난 비상사태 발생 당시 발달장애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장애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법규의 일시 유예 및 수정**

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 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 47 호를 2012 년 10 월 26 일에 발령하였습니다.

2012 년 10 월 30 일, 대통령은 Bronx, Kings, Nassau, New York, Queens, Richmond 및 Suffolk 카운티를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2012 년 11 월 2 일에는 Rockland 및 Westchester 카운티를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뉴욕의 많은 발달장애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장애자들은 그동안 받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거주지에서 쫓겨나고 프로그램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주던 주 사무소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허리케인 Sandy 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최소한의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법령 및 법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일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나 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B 조의 29-a 항에 의거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2012 년 10 월 26 일 발행된 본 행정 명령 제 47 호에 따라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추가 통보시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법률들을 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 및 수정합니다:

- A. OPWDD(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MH(the Office of Mental Health) 및 OASAS(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관할에 속한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 1. 정신건강법 제 33.17 조 및 관련 법규, 허리케인 Sandy 복구 지원 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로(에서) 운반하는 동안 일부 환자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정도로.

- B. OPWDD 또는 OMH 관할에 속한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1. 정신건강법 제 33.13 조의 하위항목 (d) 및 관련 법규, 45 C.F.R 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한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른 치료기관에 임상 기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로. Parts 160 및 164, 그리고
  2. 정신건강법 제 29.13 조 및 관련 법규, 치료 계획을 위해 모든 개발, 평가, 범위, 횟수, 문서화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임시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 거주자에 대한 새로운 또는 개정된 치료 계획을 요구하고 제공업체가 개인이 기존에 받던 치료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하는 정도로.
- C. OPWDD 관할에 속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1. 정신건강법 제 16.03 조와 제 16.05 조 및 관련 법규, OPWDD 청장이 비인증 환경의 이용을 승인해야 한다면 관련 개인들이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의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인증 받은 환경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2. NYCRR(New York Code, Rules and Regulations)의 Title 14 의 제 633.8 조, 제 633.14 조, 제 633.17 조, 교육이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이뤄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허리케인 Sandy 에 따른 복구에 대응하는 동안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의 서비스 제공업체 직원들과 허리케인 Sandy 로 인해 다른 카운티에 배치된 서비스 제공업체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이 지연될 수 있는 정도로.
  3. NYCRR 의 Title 14 의 제 635-7.3 조와 제 635-7.4 조,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허리케인 Sandy 로 배치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숙소로 사용되는 장소가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규에 거주 장소에 일부 체육시설 및 환경 요건을 담고 있는 정도로.
  4. NYCRR 의 Title 14 의 제 671.4 조, 제 635-99.1 조, 제 686.99 조,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허리케인 Sandy 로 배치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갱신 및 검토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해당 법규가 돌봄 적격성 결정 수준을 연 1 회 갱신하고 장애인의 개별 서비스 계획을 연 2 회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5. NYCRR 의 Title 14 의 제 686.3 조,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허리케인 Sandy 로 배치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청장이 승인하는 즉시 해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법규에 의해 부과된 커뮤니티 거주 수용인원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정도로.
  6. NYCRR 의 Title 14 의 제 686.15 조,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허리케인 Sandy 로 배치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해당 법규가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정도로.
  7. NYCRR 의 Title 14 의 제 635-10.5 조, 배상 받아야 할 서비스가 사실상 제공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규가 산출 가능한 서비스 일자 동안 제공된 서비스의 문서화를 요구하거나 기타 문서화 요건을 담고 있는 정도로 그리고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에 소재한 서비스 제공업체가 허리케인 Sandy 로 발생한 피해로 인해 기록물을 손실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내역을 문서화할 수 없는 정도로.

D. OMH 관할에 속한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1. 정신건강법 제 31.02 조 및 제 31.05 조,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NYCRR 의 Title 14 의 제 551, 580, 582, 585, 587, 589, 590, 594, 595, 599 조의 이행 규칙, 정신건강청장이 미인가 장소를 승인해야 하는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a) 허가된 장소에서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b) 허가한 최대 수용능력을 갖도록 요구하는 정도로.
2. 정신건강법 제 31.27 조 및 이에 상응하는 NYCRR 의 Title 14 의 제 590.9 조 및 제 590.13 조, 환자의 정당한 법적 절차 권리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관찰해야 하는 시간과 환자를 연장 관찰(extended observation) 병실로 옮겨야 하는 시간에서 응급 정신질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해 포괄적인 정신의학 응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2012년 11월 11일 Albany 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

주지사

주지사 비서